

## 상주병원 할인적용 내규

(2003. 7. 1)

제정 2003. 7. 1  
개정 2004. 1. 1  
개정 2004. 10. 1  
개정 2005. 4. 1  
개정 2010. 3. 15  
개정 2012. 7. 1  
개정 2013. 2.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2.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0  
개정 2017. 10. 1  
개정 2019. 1. 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8. 13  
개정 2021. 4. 1  
개정 2021. 10. 11  
개정 2022. 1.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병원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에 관하여 할인 범위와 할인 적용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인”이라 함은 우리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나 장례식장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진료비”라 함은 질병, 부상 등으로 진료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총비용을 말한다.
3. “장례식장 비용”이라 함은 우리병원 장례식장 사용 시 수납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시설 사용료라 함은 장례식장 안치료, 접객실, 염습실 사용료를 말한다.
5. “직원”이라 함은 상주병원에 소속된 정규직원, 계약직원, 공공보건의사, 사회복지요원, 전공의(우리병원 파견 기간만 해당)을 말한다.
6. “직계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준 직원”이라 함은 우리병원에서 근로중인 청소, 간병 등의 용역직원을 말한다.
10. “시설입소자”라 함은 우리병원과 공공보건 의료협약을 체결한 장기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할인대상자와 적용률)** 할인 대상자와 할인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단, 행위별 수가 적용 시는 원가 보전항목을 제외하고, 포괄 수가 적용 시는 원가 보전항목을 포함한다.)

1. 직원
  - 가. 외래 진료비 : 본인부담액 50% 할인(진찰료 포함)
  - 나. 입원 진료비 : 직원 실비보험으로 대체
  - 다. 장례식장 비용 : 시설사용료 전액 할인
2. 직원의 직계가족
  - 가. 외래 진료비
    - 1) 배우자 : 본인부담액 50% 할인(진찰료 포함)
    -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부담액 50% 할인(진찰료 제외)
  - 나. 입원 진료비
    - 1) 배우자 : 본인부담액 30% 할인(진찰료 포함)
    -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부담액 30% 할인(진찰료 제외)
  - 다. 장례식장 비용 : 시설 사용료 전액 할인
3. 준 직원
  - 가. 외래 진료비 : 본인부담액 50% 할인(진찰료 제외)
  - 나. 입원 진료비 : 10% 할인
  - 다. 삭제
4. 적십자 후원회원(1년 이상 후원자), 적십자 봉사원, RCY 단원, 우리병원 장수대학 재학생, 총동창회 회원(단, 동창회 회원은 소정에 절차에 의해 등록된 자)(개정 2022. 1. 1)
  - 가. 외래 진료비 : 할인 없음
  - 나. 입원 진료비 : 10% 할인
  - 다. 삭제
5. 시설입소자 및 재가방문대상자
  - 가. 외래 진료비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30% 할인
  - 나. 입원 진료비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30% 구호비 지원 대체
  - 다. 삭제
6. 삭제
  - 가. 삭제
  - 나. 삭제
7. 삭제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8. 장례식장 비용
  - 가. 삭제(2021.10.11)
  - 나. 삭제(2021.10.11)
  - 다. 우리원 장례식장 이용자 : 시설사용료 100% 할인(신설 2021.10.11)
9. 병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 가. 경북지방경찰청 : 업무협약 세부 추진내용에 의거 할인 적용

**제4조(할인 제외)**

1. 원가보전용 약제 및 재료비, 혈액구입비,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간병수수료 등은 원가보전 원칙에 따라 할인 할 수 없다.(단 신포괄수가 적용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인부담금액을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할인적용에서 제외한다.
3. 모든 건강검진 비용은 할인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할인 청구)** 이 내규에 의한 할인적용 대상자가 별표 제1호(할인적용 첨부 서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 청구금액에서 할인 적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직원의 직계가족이 할인 수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 후 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인 해당자의 의무)** 할인적용에 해당되는 자는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할인 요청을 해야 하며, 수납금액 결산 전에 별표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행정처리)** 본인부담 청구금액을 할인적용 시켰을 때에는 총계원장에 정확히 작성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서식 등 관련된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1992년 6월1일 제정된 상주적십자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액 할인 시행규칙과 관련된 모든 할인 규정 및 협약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우리사 할인 권고안에 근거하여 기 시행된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2014년 2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3조 8항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장례식장 사용이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할인적용 증빙, 제출서류 및 확인절차**

적용 항목	증빙 및 제출서류	확인 절차 및 책무	비 고
제3조 1항	직원: 신분증 파견전공의 : 파견 관련 공문서	[할인적용신청서]에 관계 직원의 서명 날인 및 수납직원의 증빙자료 확인	
제3조 2항	직원의 직계가족: 가족 관계증명서류	[할인적용신청서]에 관계 직원의 서명 날인 및 수납직원의 증빙자료 확인	
제3조 3항	준 직원: 진료비할인 대상자 명단 통보서를 근거로 전산 상에 등 록하여 내원 시 확인	준 직원: [할인적용신청서]에 관계 직 원의 서명날인 및 수납직원의 증빙자 료 확인	
제3조 4항	1.준 직원 직계가족: 준 직원 신분 확인서류 및 준 직원과의 가족 관계 증명서류 제출 2.적십자 후원회원, 봉사원, RCY단원, 우리병원 장수대학 재학생, 총동창회 회원: 신분 증빙자료	1.준 직원 직계가족: [할인적용신청 서]에 준 직원의 서명날인 및 수납직 원의 증명서류 확인 2.우리사 직원, 1년이상 적십자 후원회원, 봉사원, RCY단원, <b>우리병원 장수대학 재학생, 총동창회 회원:</b> [할인적용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및 수납직원의 증빙자료 확인	
제3조 5항	시설입소자: [진료비 할인대상자 명단통보 서]를 근거로 전산 상에 등록하여 내원 시 확인	시설입소자: [할인적용신청서] 작성 및 수납직원의[진료비할인 대상 자명단 통보서] 확인	
제3조 9항	1.경북지방경찰청 직원 : 신분 증빙자료 2.배우자 및 직계가족 : 신분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할인적용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및 수납직원의 증빙자료 확인	

(별지 제1호)

**할인적용 신청서**

차트번호		성 명		성 별	남·여
할인대상	제3조 항 ( )	관계 및 사유		진료과	
				입원실	
<p>우리병원 할인적용 내규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할인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 신청기관(직원 부서명) : 성명 : (서명)</p> <p><b>할인율 ( %)</b>    <b>할인 확인 : (서명)</b> 수납직원(확인) : (서명)</p> <p>대한적십자사 상주병원장 귀하</p>					

(별지 제2호)

<b>할인 결 의 서</b>		담 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결 재
구 분	보험·급여·일반·산재·자보·장래·( )					
적 용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청 구 내 역	본인부담 총액	수 납 금 액	할 인 금 액			
할인적용 근거	우리병원 할인적용 내규 제3조 ( )항에 의하여					

(별지 제3호)

## 직원가족 진료비 할인 신청서

### ○ 신청 직원 현황

소 속	부서명	사 번	성 명	생년월일

### ○ 진료비 할인 대상 가족 현황

환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원과의 관계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삭제) 1부

상기와 같이 가족 진료비 할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상주적십자병원장 귀하